

#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영토주권수호 및 일제식민지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08
----------	------

2012년 10월12일  
운 영 위 원 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2. 8. 28. 이정찬·김용석(도봉1)의원 외 19명
- 나. 회부일자 : 2012. 8. 29.
- 다. 상정일자 : 제241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12. 10. 12 상정)

##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이정찬 의원)

### 제안이유

- 일본은 “독도는 일본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2년도 방위백서를 확정·발표하고, 지난 2012년 8월 24일에는 일본 총리가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에 대한 침탈의지를 드러내고 있음.

- 더불어 최근 일본은 “고노담화(1993년 日정부가 위안부 동원 책임 인정)”를 통해 밝힌 일본정부의 위안부 강제연행 책임을 부정하며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하는 등 진실을 왜곡하고 있음.
- 이에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시민의 독도수호의지를 대변하고 일제식민지 하에 피해를 입은 일본군 위안부, 근로정신대, 상해임시정부와 독립군에서 활동한 유공자들에 대해 넋을 기리고 진상을 규명하며 더불어 서울시의회 차원의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발의된 관련 조례를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1) 우리나라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또다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일본의 독도에 대한 도발적 만행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영토주권수호 및 일제식민지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2) 일제식민지 하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관련 서울시 조례를 제정하고,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지원 및 상해임시정부와 독립군으로 활동한 국가유공자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며 「서울특별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조례안」 등의 심사 및 의결을 위

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영토주권수호 및 일제식민지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3)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이들의 권익보호와 명예회복,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을 위해 “서울 특별시의회 독도영토주권수호 및 일제식민지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4)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선임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5)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 박 노 수)

#### □ 검토요지

- 본 결의안은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의 독도수호의지를 대변하고 일제식민지 하에 피해를 입은 일본군 위안부, 근로정신대, 상해임시정부와 독립군에서 활동한 유공자들에 대한 넋을 기리고 서울시의회 차원의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기 발의된 관련 조례<sup>1)</sup>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영토주권수호 및 일제식민지피해자 지원 특별

1) 서울특별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조례안(이강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915)

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하는 것임.

- 독도는 현재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로서 신라가 우산국을 정벌(512년)한 후 현재까지 1,500여년간 유지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며,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독도는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편에 처음기록된 것을 시작으로 세종실록(1432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등에 기록되어 있고, 서양의 국제법체계에 따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년)로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공포한 바 있음.
- 그러나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sup>2)</sup>으로 대한제국의 국권이 상실된 이후 독도를 일방적으로 다케시마(竹島)로 바꾸고,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1998년 신한·일 어업협정 체결이후 독도 및 인근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음.
- 최근 일본정부는 “독도는 일본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2년도 방위백서를 확정·발표하고, 2012년 8월 24일에는 일본 총리가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는 등 우리나라 고유 영토 ‘독도’의 영유권을 침탈하기 위한 시도를 강화하고 있음.
- 또한, 일본은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하여, 위안부의 존재와 일본군이 저지를 만행을 부정하는 등 과거사에 대한 공식적 사죄와 법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는 상황임. 그리고 일본의 총리를 비롯

---

2) 조약(條約)은 국제상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문서를 약속함에 있어 국가간 동등한 위치에서 합의하에 맺어진 것이나 늑약(勒約)은 불평등한 관계에서 억지로 맺은 조약을 의미함.

한 각료들은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 관리와 위안부 이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고노담화’를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임.

- 동 안건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은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독도수호 의지를 앞장서서 천명하고 일본의 망언과 진실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독도수호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며, 일제식민지 하에 피해를 입고 희생된 분들의 뜻을 기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자치법규를 마련하며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와 독립유공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사안으로 판단됨.
- 다만, 동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조례안」 등의 심사 및 의결,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업무는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상해임시정부와 독립군 등 독립유공자 지원 업무는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바, 해당 부서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활동범위와 중복되지 않게 특별위원회의 활동범위 정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동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8조제2항<sup>3)</sup>에 따른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조회 결과, 행정자치위원회는 동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해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

3) 제38조(특별위원회)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위원회는 동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특위구성의 실익은 있다고 판단되나,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서울혁신기획관을 소관부서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영토주권수호 및 일제식민지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1008
----------	------

발의년월일 : 2012년 8월 28일

발의자: 이정찬·김용석(도병) 의원외 19명

## 1. 주 문

- 우리나라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또다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일본의 독도에 대한 도발적 만행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영토주권수호 및 일제식민지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일제식민지 하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관련 서울시 조례를 제정하고,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지원 및 상해임시정부와 독립군으로 활동한 국가유공자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며 「서울특별시 일제강점기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조례안」 등의 심사 및 의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영토주권수호 및 일제식민지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일본군 “위안부”할머니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이들의 권익보호와 명예회복,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영토주권수호 및 일제식민지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선임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 회의에 제출한다.

## 2. 제안이유

- 일본은 “독도는 일본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2년도 방위백서를 확정·발표하고, 지난 2012년 8월 24일에는 일본 총리가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에 대한 침탈의지를 드러내고 있음.
- 더불어 최근 일본은 “고노담화(1993년 日정부가 위안부 동원 책임 인정)”를 통해 밝힌 일본정부의 위안부 강제연행 책임을 부정하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는 등 진실을 왜곡하고 있음.
- 이에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시민의 독도수호의지를 대변하고 일제식민지 하에 피해를 입은 일본군 위안부, 근로정신대, 상해임시정부와 독립군에서 활동한 유공자들에 대해 넋을 기리고 진상을 규명하며 더불어 서울시의회 차원의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발의된 관련 조례를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8조



#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영토주권수호 및 일제식민지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문

-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도발적 망언을 멈추지 않고 있다.
- 지난 7월 31일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2012년판 방위백서를 발표하고, 지난 8월 24일에는 일본 총리가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에 대한 침탈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더불어 노다총리는 1993년 일본정부가 위안부 강제연행의 책임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부정하며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 이에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독도수호를 앞장서서 천명하고 우리의 영토를 침탈하고자 하는 일본의 망언과 진실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 또한 일제식민지 하에 피해를 입고 희생된 모든 분들의 뜻을 기리며, 진상을 규명하며 일본군의 만행을 알리고자 위안부 기림비의 건립 지원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관련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지원 및 상해임시정부와 독립군으로 활동한 유공자들을 지원하는 관련 조례 등의 심사 및 의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영토주권수호 및 일제식민지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012. 8.28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